

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894
----------	------

2021년 12월 17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3. 상정일자 : 제303회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‘서울여담재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서울여담재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제1항

제5호 및 별표 9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45조,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: 참조

○ 입법예고('21. 9. 9.~9. 29.)결과: 의견없음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조례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동대문구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(구 원각사)을 리모델링하여, 여성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여성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2020년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‘서울여담재’의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.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# □ 서울여담재의 이용료 규정 (안 제1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9 신설)

- 개정안은 서울여담재<sup>1)2)</sup>의 이용료 부과·징수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임.

현행	개정안
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	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신설>  ② (생략)	5. 서울여담재 : 별표 9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② (현행과 같음)

- 구체적으로는 안 별표 9에 역사문화교육의 교육료와 교육소통공간의 이용료에 대한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, 이는 동 개정안의 이용료 산정 내용과 유사한 현행 조례 제18조 제1항제3호<sup>3)</sup> 및 별표 8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생활문화교육과

1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6. 서울여담재 : 여성사 자료 발굴·보존·연구 및 공유, 교육·문화·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의2(서울여담재 명칭 및 기능 등) ① 제4조제6호에 따른 서울여담재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의2와 같다.

② 서울여담재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사 자료 발굴·보존·연구 및 공유
2. 여성사 자료관 운영
3. 교육·문화·전시 프로그램 운영
4.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

3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3. 여성발전센터 :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

교육실 및 회의실의 이용료 기준금액을 반영한 것임.

〈서울여담재 이용료 부과 기준(안 별표 9)〉

구 분	단 위	기 준 금 액	비 고	여성발전센터
역사문화교육	1명 1개월	15,000원~ 50,000원		생활문화 교육
교육소통공간 (서울여담재 2층)	1시간	5,000원~ 2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시간당 단가이며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</li> <li>◦ 토, 일, 공휴일은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.</li> </ul>	교육실 및 회의실

주 :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은 현행 조례 별표 9에서 일부 발췌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<sup>4)</sup> 및 제139조<sup>5)</sup>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

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,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)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5)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- 이에 개정안은 서울여담재의 이용료 부과·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.

### 3 종합 의견

- 조례안은 2020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여담재의 사용료 기준을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사용료 기준으로 삼았던 여성발전센터의 경우, 현행조례 제 19조제3항6)에 따라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, 저소득 한부모가족,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6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

③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

1.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: 해당 이용료 각각 면제. 다만, 제17조제2항제1호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,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‘다둥이 행복 카드’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을 줄인다.

장애인 등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는 바, 서울여담재의 이용료 감면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2. 그 밖에 교육과정의 이용률, 교육운영시간,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교육과정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

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9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‘서울여담재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서울여담재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1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9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,  
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9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1. 9. 9.~9. 29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서울여담재 : 별표 9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

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9]

서울여담재 이용료 부과 기준(제18조제1항제5호 관련)

구 분	단위	기준금액	비고
역사문화교육	1명 1개월	15,000원~ 50,000원	
교육소통공간 (서울여담재 2층)	1시간	5,000원~ 20,000원	◦ 시간당 단가이며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◦ 토, 일,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서울여담재 : 별표 9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비 용 추 계 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○ 서울여담재 운영 및 관리 비용

1) 사업비 : 여성사 자료관 운영, 구술사연구, 여성사 프로그램 운영

연도	항 목	내 역	예상금액 (천원)	산출기초
총계			1,128,028	
2020	비용(A-B)		395,596	
	운영 지출(A)	사업비	82,300	▶ 여성사 자료관 운영, 구술사연구, 여성사 프로그램 운영
		일반관리비	312,996	▶ 직원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- 센터장1, 팀장1, 팀원2
		소계	395,596	
	운영 수입(B)		0	
2021	비용(A-B)		349,286	
	운영 지출(A)	사업비	82,300	▶ 여성사 자료관 운영, 구술사연구, 여성사 프로그램 운영
		일반관리비	266,986	▶ 직원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- 센터장1, 팀장1, 팀원2
		소계	349,286	
	운영 수입(B)		0	
2022 (안)	비용(A-B)		383,146	
	운영 지출(A)	사업비	82,800	▶ 여성사 자료관, 구술사연구, 여성사 프로그램 운영
		일반관리비	302,946	▶ 직원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- 센터장1, 팀장1, 팀원3
		소계	385,746	
	운영 수입(B)		2,600	▶ 역사문화교육 15,000원×6명×10월×2회=1,800,000원 ▶ 교육장 및 공유공간 대관 20,000원×10월×4회=800,000원

2) 일반관리비 : 인건비, 기본경비(4대보험료, 사무경비 등)

※ 인건비(4명) : 센터장(1명), 팀장 (1명), 팀원(3명)

\*2022년 팀원1명 증원 예정

**2. 작성자**

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배화정(02-2133-5023)